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2016년 9월 6일 제정
2019년 10월 10일 전부개정
2020년 3월 31일 일부개정
2021년 3월 9일 일부 개정
2025년 9월 15일 일부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이하 “이 회”라 한다.)와 이에 속한 학과(부) 학생회 회장단 선거가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회장단 선거, 사회과학대학 학과(부)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원칙) 학생회 회장단의 선출은 해당 학생회 회원의 직접선거·보통선거·자유선거·평등선거·비밀선거에 의한다.

제4조(공정경쟁의무) 후보자 및 후보자를 돕기 위하여 선거에 참여한 사람은 선거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책 또는 정견을 지지·비판하거나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① 집행위원회 기타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장 선거관리기관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설치 및 지위) ① 이 회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선거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회칙과 세칙에 따라 선거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고 결정한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집행위원회가 회원 중에서 추천한 1인

2. 운영위원회가 회원 중에서 추천한 1인

3. 각 학과(부) 학생회 집행부가 회원 중에서 1인씩 추천한 인원

③ 집행위원회·운영위원회 또는 각 학과(부) 학생회 집행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추천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이 회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이 6인 미만임에도 각 학과(부) 학생회 집행부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추천을 거부하거나 부득이하게 추천할 수 없을 경우, 무작위 선별을 통해 선정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단위가 선거 관리 위원을 1인을 추가로 선정한다.

1. 해당 연도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학과

2. 본 회의 집행위원회

제8조(종류 및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위원회 구성 후 일주일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선거계획에 관한 사항
2. 선거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선거와 관련된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4. 선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및 제재처분의 부과에 관한 사항
5. 후보자의 등록결정이나 등록무효에 관한 사항
6. 후보자의 당선결정이나 당선무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회칙과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는 회칙 또는 세칙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11조(의사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제재처분의 부과
 2.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3. 선거와 관련된 규정의 해석
- ② 위원회는 개인의 신상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그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회의”란 그 결정에 앞서 필요한 심사 및 토의, 조사, 심문 기타 심의절차를 모두 마치고 최종적인 평의 및 의결을 앞둔 회의를 뜻한다.

제12조(위원장,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가 처음 구성되고 위원장을 호선하기 전까지는 이 회 회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이 경우에 위원자격이 없으면 이 회 회장은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재적인원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13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추천을 받은 날의 이튿날로부터 처음 맞이하는 2학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1차례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4조(부적격사유)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이 회 회원이 아닌 사람
2. 징계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
3. 선거운동본부에 소속된 사람
4. 제13조제2항에 따라 한 차례 중임하고 그 임기가 종료된 사람
5. 제16조에 의하여 해임된 사람

②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있게 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위원은 즉시 퇴직된다.

제15조(제척,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상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면 대의원총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그 위원을 관련 업무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상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하면 스스로 관련 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해임) 위원회 위원이 회칙·세칙을 현저히 위배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직무상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면 학생총회·대의원총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그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경우에는 해임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성립한다.

제2절 선거집행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에는 선거사무의 처리를 보조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선거집행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선거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위원의 임면) 선거집행위원의 임명 및 해임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한다.

제19조(관장사항) 선거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선거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20조(준용규정) 제13조 및 제14조는 선거집행위원회에 준용한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1조(선거권) 모든 회원은 이 회 회장단 선거 및 자신이 속한 학과(부) 학생회 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을 가진다.

제22조(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사과정에 2학기 이상 등록한 회원은 이 회 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선거일 현재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사과정에 1학기 이상 등록한 회원은 자신이 속한 학과(부) 학생회 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3조(선거권·피선거권이 없는 자) ① 휴학 중인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단,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칙에 의한 징계처분이 확정되어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회원은 징계의 효력이 상실되는 때까지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③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가진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이 회 회장 및 부회장, 집행위원
2. 학과(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제4장 선거일과 선거기간

제24조(선거기간) ① 선거기간은 25일 이내로 한다.

②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이 종료된 날의 이튿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의미한다.

제25조(선거일) ① 선거일은 다음의 기간 내에 둔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임기만료일 60일 전일부터 15일 전일까지
2. 보궐선거는 그 선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5일이 되는 날까지
3. 재선거는 1학기 시작일로부터 45일이 되는 날까지

(단, 1학기 개강 이후 30일 이내 재선거를 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선거일은 총 3일로 한다. 단, 선거일의 마지막 날에 전체 투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에 미달하는 때에는 2일을 연장한다.

제5장 선거인명부

제26조(명부작성) 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제27조(명부열람) 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주된 사무소나 그 밖에 접근이 용이한 장

소에 비치하여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정정요구와 결정) ① 선거인명부에 오기·누락이 있거나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 회 회원 누구나 위원회에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선거인명부의 정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9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0일 전에 확정된다.

②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수정할 수 없으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6장 후보등록

제30조(선거권자의 추천) ① 이 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회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추천장에 이 회 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자 5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학과(부)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회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장에 해당 학생회 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피선거권이 없는 회원이 받은 선거권자의 추천은 효력이 없다.

제31조(등록서류) 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회원은 후보자등록기간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장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으면 [별지 4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한다.

제32조(후보등록을 위한 사퇴) 제23조제3항 각 호의 직에서 사퇴하여 피선거권을 회복하려는 회원은 사퇴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퇴직된다.

제7장 선거운동

제33조(선거운동의 정의) 이 세칙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통상적인 준비행위
3. 후보자의 정책·정견 등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제34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이 종료된 날의 이튿날로부터 선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만 이를 할 수 있다.

제35조(선거운동본부의 설립) ① 후보자등록을 마친 회원은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한 것으로 본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회장후보와 부회장후보, 선거운동원으로 구성한다.

제36조(선거운동원) ① 선거운동본부는 선출 희망 단위의 회원 중에서 선거운동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본부마다 선거운동원의 총인원은 15인을 넘지 못한다.

③ 선거운동본부가 선거운동원을 모집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거운동원 명단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거운동금지처분을 받은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이 회 회원이 아닌 자
2. 이 회 회장 및 부회장, 집행위원
3. 학과(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4. 위원회 위원 및 선거집행위원

제38조(위임규정) 위원회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선거운동의 장소적 범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 토론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투표

제1절 종이투표

제39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선거투표를 종이로 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0조(투표용지) ① 후보가 단수일 경우에는 투표용지 위에 찬성칸 및 반대칸을 구분하여 두어야 한다.

② 후보가 복수일 경우에는 투표용지 위에 각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칸으로 구분하여 두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기권, 지지후보 없음 등의 다른 칸은 두지 아니한다.

④ 투표용지의 양식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41조(유효투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보지 아니한다.

1. 卜 또는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卜 또는 ○표 안이 매워진 것으로서 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하나의 칸에만 둘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기표된 것
3. 선거권자가 선거일의 투표개시 중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권자의 투표
4. 일련번호용지구분선을 절취하지 아니한 투표

제42조(무효투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본다.

1. 위원회가 발행한 정식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
2. 위원회가 검인한 직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
3.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행한 투표
4. 투표관리관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
5. 어느 칸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투표
6. 여러 칸에 걸쳐서 기표를 하거나 둘 이상의 칸에 기표한 투표
7.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투표
8. 卜 또는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투표
9. 卜 또는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투표
10. 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투표

제43조(투표소) ① 위원회는 지정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투표소에는 기표소, 투표함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 ③ 투표소에는 위원회가 부착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게시물도 부착할 수 없다.
- ④ 투표소의 기표공간은 그 내부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투표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어떤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된다.

제44조(투표율의 산정) ① 투표율은 선거권자의 총수에 대한 전체 투표수의 비율로 한다.

- ② 전체 투표수는 유효투표와 무효투표를 합한 투표수로 한다. 단, 제4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무효투표는 그 합에서 제외한다.

제2절 전자투표

제45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선거투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6조(투표화면) ① 후보가 단수일 경우에는 투표화면 위에 찬성칸 및 반대칸을 구분하여 두어야 한다.

② 후보가 복수일 경우에는 투표화면 위에 각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칸으로 구분하여 두어야 한다.

③ 투표화면에 기권칸 또는 지지후보 없음칸을 둘 수 있다.

제47조(유효투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투표는 유효투표로 본다.

제48조(무효투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본다.

1.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리투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투표 (이하 “부정투표”라 한다.)
2.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선거권이 없는 자가 행한 투표
3. 시스템오류로 인하여 찬반 또는 양자택일의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투표

제49조(본인인증) ① 선거권자는 투표하기 전에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선거권이 있음을 인증하여야 한다.

② 본인인증은 학번,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확인받는 방법으로 한다.

제50조(투표율의 산정) ① 투표율은 선거권자 총수에 대한 전체 투표수의 비율로 한다.

② 전체 투표수에는 무효투표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절 보칙

제51조(부정투표의 처리) ① 대리투표나 그 밖의 부정투표는 그 적발된 수만큼 전체 투표수에서 제외하여 투표율을 산정한다.

② 부정투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선거결과의 효력을 다룬다.

1. 부정투표수가 전체 투표수의 100분의 3 이상인 때에는 선거를 무효로 한다.
2. 부정투표수가 전체 투표수의 100분의 3 미만이나 선거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오차를 발생하게 할 때에는 선거를 무효로 한다.

제52조(재투표의 사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투표를 실시한다.

1. 투표함의 분실,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고 그 투표수가 선거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경우
2. 부정투표가 있고 그 투표수가 총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경우 또는 제51조제2항에 의하여 선거가 무효로 된 경우
3. 시스템오류로 인하여 찬성, 반대, 기권 기타 선택칸 또는 후보자의 득표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투표가 전체 투표수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4. 전체투표수의 과반이 기권 또는 지지후보 없음인 경우

제53조(재투표의 실시) ① 재투표는 위원회가 재투표의 실시를 결정한 날의 이튿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 재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하고 선거투표만 한다.

③ 재투표의 투표일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52조제4호를 사유로 한 재투표인 경우, 기권 또는 지지후보 없음 칸은 두지 않는다.

제54조(재투표에 따른 세칙의 적용) 재투표를 실시하게 된 때에는 이 세칙에서 “개표결과를 공표한 날”은 재투표의 개표결과를 공표한 날로 본다.

제9장 개표

제55조(개표의 개시) ① 투표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투표함의 개봉 및 개표 또는 투표결과확인을 위한 서버열람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제56조(개표의 중지) 위원장은 개표장소가 소란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방해나 장애가 제거될 때까지 개표를 중지할 수 있다.

제57조(개표결과의 공표) 개표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표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8조(개표참관인) ① 위원회는 회원 중에서 개표참관인을 모집하여야 한다.

② 개표참관인의 모집은 공개 및 무작위추첨으로 한다.

③ 개표참관인의 정원은 2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단, 개표참관인에 지원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2인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④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에 입회하여 개표상황을 참관하고 감시한다.

⑤ 선거운동본부에서 파견한 각 1인씩 개표참관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파견인원은 제3항의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장 당선인

제59조(당선요건) ① 후보가 단수인 때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 해당 후보를 당선으로 한다.

② 후보가 복수인 때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최다 득표한 후보를 당선으로 한다. 단, 최다 득표한 후보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과반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 선거에서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0조(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한 경우의 당선결정)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투표함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제11장 선거에 관한 이의

제61조(이의신청기간) 위원회는 개표결과를 공표한 날의 이튿날부터 5일 동안 이의신청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62조(이의신청의 방법) 회원은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인의 후보자격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해당 선거의 선거권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유를 붙여 이의신청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3조(청구인의 발언권 등) ① 제62조의 이의신청에 있어서 이의를 대표로 제기한 회원 1인(이하 “대표청구인”이라 한다.) 및 이의신청에 동의하여 서명한 이들 중에서 대표청구인이 지명한 회원(그 정원은 3인 이내로 한정한다.)은 이의신청의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대표청구인은 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려는 회의를 소집하기 1일 전까지 대표청구인에게 그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한다.

제12장 선거질서위반행위와 제재

제65조(선거질서위반행위와 그 예시)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는 금지된다.

1.(각종규정위반) 회칙·세칙의 규정 또는 위원회의 처분이나 결정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금지된 행위

2.(매수 및 이해유도) 회칙 또는 이 세칙에 의하여 하여야 할 의무 있는 행위를 하지 않게 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원·선거권자 또는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에게 금전,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3.(금품수수) 상대방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진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상대방부터 금전,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4.(선거자유 방해)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5.(위계에 의한 선거자유 방해) 직무상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특정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투표·개표의 방해 및 간섭) 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하는 행위 혹은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하는 행위 혹은 투표소에서 특정한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으로 투표·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7.(사위등재·사위투표) 속임수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특정한 선거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학적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혹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

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하는 행위

8.(선거업무방해) 위원회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9.(선거관계시설에 대한 교란) 위원회 위원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는 행위

10.(선거권·피선거권의 행사방해) 투표용지나 투표용구 또는 입후보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훼손·멸실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11.(제한범위 밖의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장소나 시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12.(선거운동기간위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또는 예측이 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실시되는 보궐선거나 재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물을 사용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반포·배포·제공하는 행위

13.(선거문서위조) 짓궂은 장난을 목적으로 혹은 행사할 목적으로 입후보등록증, 공정선거서약서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

14.(허위사실유포) 짓궂은 장난을 목적으로 혹은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선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원 또는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15.(후보자 비방)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선전문서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의 친인척이나 그를 돕는 선거운동원을 비방하는 행위

16.(당선무효유도)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를 돕는 선거운동원 등을 도발하거나 기망 또는 폭행·협박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에 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2항에 열거된 행위를 예비·음모하거나 선동 또는 교사(敎唆)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고발) ① 회원은 누구든지 선거질서위반행위 기타 선거에 관한 부정(이하 “선거부정 등”이라 한다.)이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고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 선거집행위원 기타 선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선거부정 등이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고발하여야 한다.

제67조(사건의 조사 및 보고) ① 위원회는 선거부정 등이 있음을 인지하거나 선거부정 등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관련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 선거부정 등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그 선거부정 등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68조(제재처분의 종류 및 효력) ① 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회칙·세칙 또는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선거운동본부의 구성원이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위반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별표]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1. 주의

2. 경고

② 주의 및 경고는 함께 과하거나 한 번에 1회 이상 과할 수 있으며, 주의 3회는 경고 1회로 본다.

③ 경고가 3회 누적된 선거운동본부는 그 즉시 해산되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소속된 회장후보 및 부회장후보는 후보자격을 상실한다.

제69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제재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

항을 지체 없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불복과 재심의) ① 선거운동본부는 제69조에 따라 결정사항을 통지받으면 그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정당한 이유를 붙여 불복할 수 있다. 단, 그 전에 불복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재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상태에서 관련 사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제71조(불이익변경의 금지) 불복절차를 거쳐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는 제재처분은 처음 결정한 제재처분보다 가중할 수 없다. 단, 다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선거거부정 등이 밝혀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2조(적정절차의 보장) 위원회는 제재처분의 부과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선거운동본부 또는 당사자에게 변론 및 소명, 최후의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3조(제재처분의 확정 및 공고)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면 제재처분은 확정된다.

1. 선거운동본부가 결정사항을 통지받고 24시간 이내에 불복하지 아니할 경우
2. 선거운동본부가 결정사항을 통지받고 불복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선거운동본부가 불복하여 재심의를 거쳤음에도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② 위원회는 제재처분이 확정되면 다음 사항을 공고한다.

1. 제재처분을 받은 선거운동본부
2. 제재처분을 부과한 이유의 요지
3. 부과한 제재처분의 종류 및 정도

제13장 후보자의 사퇴

제74조(사퇴의 방법) ① 후보자는 후보자의 직에서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해당

위원회에 사퇴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퇴서에는 사퇴의 이유와 일시를 기재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75조(사퇴의 효력 및 범위) ①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후보자격을 상실한다.

② 회장후보와 부회장후보 중에서 어느 일방의 사퇴는 그와 함께 등록한 다른 일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6조(회장후보신분의 승계) ① 회장후보만이 사퇴한 때에는 함께 입후보한 부회장후보를 회장후보로 한다.

② 제1항은 회장후보가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77조(사퇴의 제한) 후보자는 선거부정 등이 의심되는 사유로 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 없이 사퇴할 수 없다.

제78조(준용규정) 제74조 내지 제77조는 당선인에 준용한다.

제14장 보칙

제79조(무효판정의 효력과 범위) ① 등록무효로 된 후보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이미 당선인이 된 후보자가 등록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③ 회장후보와 부회장후보 중에서 어느 일방의 등록·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와 함께 등록한 다른 일방의 등록·당선은 또한 무효로 한다.

제80조(피선거권 없는 사유로 인한 등록무효) 후보등록을 할 당시에 회장후보 또는 부회장후보에게 피선거권이 없을 경우에는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81조(추천서명수 미달 등의 사유로 인한 등록무효) ①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최소인원에 미달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추천을 받거나 추천의 대상이 된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단, 선거규정의 위반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피선거권을 회복한 후 다시 교부받은 추천장에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등록서류의 미제출로 인한 등록무효)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83조(부정행위로 인한 등록무효) 회칙이나 세칙 또는 규칙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거나 서류를 위조한 경우에는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84조(당선인의 선거부정행위로 인한 당선무효) 회장후보 또는 부회장후보가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운영위원회가 징계처분으로 권리제한, 권리박탈 또는 제명을 결정하고 그 징계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회장후보 및 부회장후보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85조(제재로 인한 당선무효) 경고를 3회 받은 선거운동본부 소속 회장후보 및 부회장후보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86조(부적격 사유의 적발로 인한 당선무효) 후보자격을 상실하거나 후보자격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단, 후보자가 후보자의 직에서 사퇴한 경우에는 제75조 및 제76조의 예에 의한다.

제87조(무효판정의 시효완성) ①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시효는 위원회가 개표 결과를 공표한 날의 이튿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가 완성되면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선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88조(무효판정의 적용 및 이의제기) ① 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이 세칙에 정한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 대한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후보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제69조 내지 제73조를 준용한다.

제89조(세칙의 개정) ① 이 세칙의 개정은 대의원총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찬성을 얻으면 이 세칙의 개정은 확정되며, 이 회 회장은 지체 없이 개정된 세칙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90조(별지 등의 서식) ① 이 세칙에 부수된 별지 및 별표의 서식은 위원회가 개정할 수 있다.

② 개정된 별지 또는 별표의 서식은 위원회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1조(세칙의 소급효) ① 회칙 또는 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세칙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안에는 개정되기 전의 세칙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은 별지 및 별표의 서식을 개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92조(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① 이 회 회장단 선거를 총학생회 회장단 선거나 다른 단과대학 학생회 회장단 선거와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함께 실시할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9조, 제45조 및 제46조, 제49조, 제55조 및 제56조, 제58조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특별히 다른 결정을 하지 않으면 총학생회의 선거관리기관에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된 사항은 그 위탁된 범위 내에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른다. 단, 위원회가 이와 달리 결정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2016년 9월 6일)

1. 부정투표가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부정투표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위원에 대한 위원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고, 해당 선거에 대한 선거권 박탈과 함께 공개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권고한다.

② 일반 유권자에 의한 경우는 해당 선거에 대한 선거권 박탈과 함께 공개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권고한다.

③ 선거권을 박탈당한 유권자의 경우,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제 46조에 의거해 해당 선거의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해도 해당 선거의 선거권은 복구되지 않는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 처리를 이행하지 않는 자의 본 회의 학생회칙 제 4조에 명시된 학생회원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를 포함한 판결문을 공고해야 한다.

※ 본 선거시행세칙은 회칙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정이 가능하다. (단, 개정이 완료된 이후 확정된 개정안은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보고되어야 한다.)

부 칙(2019년 10월 10일)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소급효) 이 세칙이 시행되기 전부터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였던 회원에 대하여는 제14조를 적용한다.

제3조(개정사항의 보고) 이 회 회장은 운영위원회가 이 세칙을 개정하고 처음 소집 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세칙이 개정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중임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세칙이 시행되기 전에 위원회 위원직을 맡은 적이 있는 회원이 이 세칙에 의하여 다시 위원회 위원이 된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에 의한 중임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중임한 회원은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퇴직된 것으로 본다.

[별표]

제재처분 부과기준

부정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부정의 유형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면제 ~ 주의 1회	주의 1회 ~ 경고 1회	경고 1회 ~ 경고 1회 및 주의 2회	경고 2회
회칙 또는 세칙을 위반한 경우	주의 1회 ~ 경고 1회	경고 1회 ~ 경고 1회 및 주의 2회	경고 1회 및 주의 2회 ~ 경고 2회	경고 2회 이상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경우	경고 2회 이상	경고 2회 및 주의 1회 이상	경고 2회 및 주의 2회 이상	경고 3회

후보등록신청서

회장후보자									
성 명					학 번				
소 속	사회과학대학				학과(부)				

부회장후보자									
성 명					학 번				
소 속	사회과학대학				학과(부)				

위 사람은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후보등록을 신청하오니 이를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년 월 일

회장후보 신청인 _____(서명 또는 날인)

부회장후보 신청인 _____(서명 또는 날인)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귀하.

공정선거서약서

성명		학번												
소속	사회과학대학												학과(부)	

나는 선거규정을 준수하고 선거에 공정한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시행세칙」 제4조에 정한 공정경쟁의무를 숙지하였으며,
제65조에 정한 금지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소환 및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성실히 협조할 것이며 제재처분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_____(서명 또는 날인)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귀하

학생회선거후보자 추천장

		회장후보자	부회장후보자
이	름		
소	속		
학	번		

※ 부회장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입후보한 경우에는 위에 “없음”으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이하 서명인은 위 사람을 학생회 회장단 선거의 후보로 추천합니다.”

[illegible]

※ 우측 상단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점인된 추천장입니다.

입 후보등록증

회장 후보	성 명		학 번																		
	소 속	사회과학대학																학과(부)			
	학 년	학년																			

부회장 후보	성 명		학 번																
	소 속	사 회 과 학 대 학												학 과 (부)					
	학 년	학 년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서 위 사람이 후보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후보를 신청하였기에 후보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위 사람은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한 것으로 보며,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교부일자 : 년 월 일

사 회 과 학 대 학 학 생 회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위 원 장

홍 길 동

※ 위 이름 옆에 선거관리위원장 직인

○○학생회선거투표

회 장 후 보	○	○	○
부 회 장 후 보	○	○	○

찬 성

반 대



투표관리관

공 정
선 거

No. 0000

사회과학대학학생회
선 거 관 리 위 원 회

○○학생회선거투표

회 장 후 보	○	○	○
부 회 장 후 보	○	○	○

찬 성

반 대



투표관리관

공 정
선 거

No. 0000

사회과학대학학생회
선 거 관 리 위 원 회

○○학생회선거투표

회 장 후 보	○	○	○
부 회 장 후 보	○	○	○

찬 성

반 대



투표관리관

공 정
선 거

No. 0000

사회과학대학학생회
선 거 관 리 위 원 회

○○학생회선거투표

1	회 장 후 보	○ ○ ○	
	부회장후보	○ ○ ○	

2	회 장 후 보	○ ○ ○	
	부회장후보	○ ○ ○	



투표관리관

공 정
선 거

No. 0000

사회과학대학학생회
선 거 관 리 위 원 회

○○학생회선거투표

1	회 장 후 보	○ ○ ○	
	부회장후보	○ ○ ○	

2	회 장 후 보	○ ○ ○	
	부회장후보	○ ○ ○	



투표관리관

공 정
선 거

No. 0000

사회과학대학학생회
선 거 관 리 위 원 회

○○학생회선거투표

1	회 장 후 보	○ ○ ○	
	부회장후보	○ ○ ○	

2	회 장 후 보	○ ○ ○	
	부회장후보	○ ○ ○	



투표관리관

공 정
선 거

No. 0000

사회과학대학학생회
선 거 관 리 위 원 회